

인쇄문화산업진흥법과 인쇄의 미래



홍 우 동
대한인쇄문화협회장

지난 4월말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이 국회 문화관광소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전 체회의를 통과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남아있고 어려움도 많다. 그러나 반드시 이 법은 제정되어야 하고 이와같은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부나 국회도 공감한 분위기이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이 법이 만약 이번에 제정되지 않으면 다시 시작을 해서라도 꼭 제정해야 하며 국가적으로나 우리 인쇄문화산업의 입장으로 보아서나 반드시 제정될 것을 전제로 하여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의 제정과정

이 법을 추진하는 데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여러 가지 조건이 모두 어려웠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반대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인쇄문화협회장,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등 3단체장의 합의 후 각 단체의 이사회와 총회는 이를 반대없이 승 인했고, 관계 정부 당국과 입법부에서도 충분한 이해와 법 제정의 당위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4개 정당에서 70여명의 국회의원이 본법 발의에 서명해주겠다고 했지만 일정상 40명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바 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기록적인 일들도 많았다. 법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논리 개발도 많이 부족하여 고비고비마다 힘들게 넘어왔지만 이 법은 꼭 필요한 법이었기에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의 제정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대한민국은 인쇄종주국이고, 인쇄는 문화이고, 문화산업이고, 모든 문화의 뿌리이고, 무한성장 가능산업이고, 수출에 있어서도 효자산업일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중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한편, 다른 수출산업에 있어서도 첨병과 전위적 역할을 한다는 것 등이 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으로 인정받아 현재에 이르렀다.

아직도 가야할 길은 남았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법 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으로 남은 과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2. 인쇄문화홍보의 필요성

나는 ‘내가 누구인가’, ‘뭘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때마다 확실한 인쇄인이었으며, 스스로 인쇄학자이고 싶었고, 인쇄학자라고 지칭해 줄 때를 가장 보람있게 생각해 오던 터였다. 그런데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추진하면서부터 약 2년동안은 인쇄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고 힘들었다.

부딪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쇄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 심지어는 명함이나 청첩장을 찍는 정도의 일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경우마저 있었다.

이럴 때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인쇄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궁색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만 했다.

인쇄학자임을 스스로 자청해보기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인쇄를 설명하기가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이고 보면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은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현주소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인쇄술이라는 것과 구텐베르크를 들고 나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 인쇄유물이고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 ‘직지’라고 하면 이것은 아직도 좀 생소한 표정들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인쇄문화유산을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장차 교육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만 그에 앞서 우리도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인쇄를 ●세계문화의 뿌리 ●우리 인쇄의 위대한 역사 ●나라와 세계의 뿌리 문화산업 ●수출의 전위산업 · 첨병산업이라고 힘주어 강조해왔다. 그러나 우리 인쇄의 현주소는 아쉽지만 위에 설명한 바와 다르지 않다.

3. 직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서 이르는 직지에 대해서는 광의적 해석이 아니라 협의적 해석으로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그리고 인쇄와의 관계만을 학술적 학문적이 아닌 단순한 인쇄물로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인쇄술이라는 것과 구텐베르크를 들고 나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 인쇄유물이고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 ‘직지’라고 하면 아직도 생소한 표정들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인쇄문화유산을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지난 2001년 유네스코는 직지가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이라고 공인하였다. 그전 까지는 구텐베르크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가로 세계의 교과서를 메웠고 독일이 세계인쇄문화종주국이었으며, 독일의 인쇄문화와 인쇄술은 세계가 신뢰하는 바탕을 힘으로 날로 발전하였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더욱 힘을 얻어 세계 제일의 인쇄대국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쇄 기자재의 수출로 막대한 국부를 누렸으며, 구텐베르크 박물관은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직지는 물론 인쇄문화의 가치를 알고 있는 국민은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게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가. 만시지탄지만,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직지의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인 가치를 연구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4. 진흥법이 인쇄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 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가끔 있다. 목적을 잘 모르는 경우 당연한 질문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의 환경은 국토, 인구, 국민독서, 법적환경 등에 있어서 모두가 최악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쇄문화산업은 생존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의 인쇄문화산업은 지금까지 일컬어왔던 필요성과 가치보다 더욱 중요한 산업으로 떠올랐다. 인간생활의 어떤 부분에서도 인쇄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농공상정(農工商政)은 물론 역사, 교육, 문화, 국방, 사회, 산업이 그렇고 인간이 사용하는 어떤 도구에도 인쇄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이다. 미래의 인쇄는 이상과 같은 인간생활에 있어서의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인쇄는 물과 공기에까지 도전하고 있으며, 소리가 나는 인쇄, 향기가 나는 인쇄가 개발되었고, 첨단 제품일수록 고급인쇄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으며, 전기 전자회로까지 인쇄로 대체하는 것이 연구중이다.

이와같이 역사가 거듭될수록 인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무한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시대적 소명은 우리 인쇄인이나 인쇄단체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이러한 인쇄의 현재와 미래를 정부나 입법기관에서 이해하고 진행하게 된 것이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다.

그러나 법은 밥과 빵이 아니다. 약(藥)이며, 언덕이고, 농기구같은 도구인 동시에 물과 공기이다. 작업에 비유한다면 추수를 하기 위한 봄철의 파종이다. 그래서 가을

이 되면 결국 쌀과 빵이 될 수 있으며, 약도 되고,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5. 이제부터의 과제와 대책

이 법은 수의계약같은 일에는 비교할 바가 못된다. 단체수의계약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제도화되어 적지않은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게만 수혜가 돌아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은 그렇지 않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수혜가 될 것이며, 아직 모두 언급하기엔 시기상조이지만, 단체수의계약 그 이상의 영구적인 인쇄의 언덕과 도구와 약이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어려운 문화산업을 영위하면서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이제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다. 즉 다행하게도 문화산업중에서도 뿌리가 되는 ‘인쇄문화산업’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하나의 약과도 같은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되는 영광의 시대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만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더욱 법다운 법이 될 수도 있도록 그에 따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

6. 이제는 콘텐츠이다.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남은 문제는 콘텐츠다. 물론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배부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라는 이 하나의 제목만으로도 우선 만족해야 한다. 이 법명 하나만으로도 국가의 책무로 정한 기본 골격이 서는 것이고, 국가 주무기관과 지방단체장이 인쇄인들과 협의하여 인쇄문화산업이 진흥 발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쇄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인쇄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 법에 따라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쇄의 산학은 물론 관련업계의 중의를 모아 비전적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그 묘와 기술적 방안을 찾고, 또 부족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정법률안으로 접근해 나아가는 것이다. 있으나마나한 법, 별로 효과가 없는 법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개정하면서 꼭 필요한 법으로 만들어 가야 하며, 그래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 법이 제정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개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이제부터의 할 일이다.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라는 이 하나의 제목만으로도 우선 만족해야 한다. 이 법명 하나만으로도 국가의 책무로 정한 기본 골격이 서는 것이고, 국가 주무기관과 지방단체장이 인쇄인들과 협의하여 인쇄문화산업이 진흥 발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